

## 이사회회의록

1. 회의소집 통지일자 : 2017.07.01.
2. 회의개최 년 월 일 : 2017.08.01.12:00
3. 회의장소 :그랜드엠버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
4. 임원총수 : 이사 8명, 감사 2명
5. 출석임원수 :이사 7명, 감사1명
6. 회의안건 :이사 연임, 이사선임, 정관변경
7. 회의내용

의장 문규영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이사의 출석을 확인 후, 이사회 의결 정족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첫번째의안으로,의장은 일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을 알리며, 이사 및 대표이사문규영, 이사 이강호,이사 허은, 이사 서정호의 임기가 2017년 08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연임에 대한 안건을 부의하다.

이에 의장이 위 임원의 연임을 제의하다. 이에 이사 유시호가 동의하고, 이사 전원이 재청하여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두번째 의안으로,의장은 김일섭회장을 2017.08.01.로 재단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에 이사 윤은기가 동의하고 이사 서정호가 재청하다. 의장이 표결에 부치니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세번째 의안으로, 의장은 '아주 좋은 꿈터'운영에 대한 근거와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관내용 일부 변경에 대한 안건을 제의하다.

이에 이왕재 이사가 동의하고, 이강호 이사가 재청하다.

의장이 표결에 부치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의장은 복지재단의 모든 원안이 의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고, 세부 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하면서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서기 2017년 8월 1일

사회복지법인 아주복지재단 이사회 출석임원 현황

의장 이 사장 문 규 영



이 사 이 강 호

(인)



이 사 서 정 호

(인)



이 사 윤 은 기

(인)



이 사 허 은

(인)



이 사 이 왕 재

(인)



이 사 유 시 호

(인)



감 사 류 승 우

(인)



# [참고] 세부 주요 조항 정관변경

✓ '아주 좋은 꿈터'에 대한 운영근거와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관내용 일부 변경

## 변경 前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사회복지 향상을 기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9-3번지에 둔다

## 변경 後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사회복지 향상을 기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문구 삭제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에 둔다.

※ 사유 : 도로명 주소 변경

변경 前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2. 저소득가정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3.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후원 및 홍보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경 後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2. 저소득가정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3.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후원 및 홍보
4.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지역사회복지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6.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 장애인가족지원사업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의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8.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사유 :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지역사회복지사업  
-> 꿈꾸는 도서관 개방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자원봉사활성화사업  
-> 자원봉사활동운영및 지원, 자원봉사자교육 및 양성
3.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 장애인가족지원사업  
-> 아주 특별한 여행 지원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의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아주 행복한 공부방, 멘토링사업 진행

변경 前

제20조(임원의 해임)

- ①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 손상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변경 後

제20조(임원의 해임)

- ①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 손상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 사유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관련 규정준수

변경 前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後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 ①항 내용동일
-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③항 내용동일
-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사유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관련 규정준수

변경 前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변경 後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항 내용동일
- ②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사유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관련 규정준수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사유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표기에 따른 삭제